

XIV. 차량지원사업 지침

1. 배분차량관리 기본사항

가. 적용범위

-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한 모든 차량

나. 관리기간

- 차량 배분사업의 사업 수행기간은 5년이며 사업수행 기간을 포함한 9년간은 차량관리 기간으로 함.
- 차량관리 기간 계산방법
 - 차량을 직접 배분받은 경우(현물, 구매물품 배분, 재배분) : 배분계약일로부터 계산
 - 차량 구매 비용을 배분받은 경우(현금 배분) : 차량 구매 후 실제 인수한 날로부터 계산
- 차량 구매 비용을 배분받은 경우 수행기관은 모금회에 인수 날짜를 통지하고 모금회는 수행기관에 사업 수행기간과 차량관리 기간을 별도 통지해야함

다. 배분차량 주요 원칙

- 사업 수행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차량종합보험가입을 유지함.
- 사업 수행기간 종료 이전에 매각(수출말소 포함) 및 폐기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함.
- 배분사업 계약서에 명시된(또는 모금회가 별도 통지한) 사업수행 기간 경과 후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금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처분이 가능함. 단, 차량 관리기간 내에 임의 처분 시 대금 환수 할 수 있음.
- 차량 관리기간 내에 임의 처분 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음.
- 차량 폐차는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함.
- 반납 또는 환수된 차량의 경우 해당 지역에 재 배분함.
- 도난 및 완파 시에 대한 보상금은 반납 처리 또는 차량의 재구입만 가능함.
- 사업수행기간 내에 모금회 표시 및 도색변경은 불가하나 최초 배분계약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차량은 모금회 표시 및 도색 제거 가능함.
- 차량외장에 모금회 지원차량임을 표시하고 배분기관명을 표기하여야하나 필요한 경우(차량 이용자에게 낙인감을 줄 우려가 높은 경우 등)에는 본 회와 협의하여 표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.
- 배분 차량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만 운영하며 직원 출퇴근 및 사적사용은 불가함.
- 관련 법규 준수 및 안전 운행을 통해 배분 차량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.

라. 배분차량 보고서 제출

- 사업 수행기간에 따라 매년 연간보고서 접수(p185, 별첨1 양식 참고)
 - ※ 사업 수행기간은 5년이며 재배분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음.
 - (예 : 사업 수행기간이 5년이면 차량연간보고서 5회 제출, 차량 재배분으로 인해 사업 수행기간이 2년이면 차량연간보고서 2회 제출하여야 함.)
- **연간보고서 제출 시기**
 - 1~6월 배분차량 : 매년 1월 말까지 제출(1회차 연간보고서는 차년도 1월 말)
 - 7~12월 배분차량 : 매년 7월 말까지 제출(1회차 연간보고서는 차년도 7월 말)
 - (예 : 2023년 3월 배분된 차량의 경우, 2024년 1월 1회차 제출 후 2028년 1월까지 매년 1월 말까지 총 5회 연간보고서 제출)
- 연간보고서 제출 시 차량운행/정비일지(p186, 별첨2. 양식 참고), 자동차보험가입증서, 자동차 등록 원부(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, 차량 내·외부 사진 등 접수
 - ※ 차량운행/정비일지는 배분기관 내부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별첨 서식의 관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.

2. 배분계약기간(사업수행기간) 만료 전 차량 관리

- 사업 수행기간 종료이전에 매각(수출말소 포함) 및 폐기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함.
- 차량 외장에 모금회 지원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, 차량 인수 당시와 동일하게 외장을 유지해야 함.
 - ※ 사고 또는 변색 등 기타사유로 인해 모금회 지원표시가 훼손되었을 경우, 신속히 복구하여야 함 (권리이양 이전까지 모금회 지원표시 유지)

3. 배분계약기간(사업수행기간) 만료 후 차량 관리

- 배분계약기간(사업수행기간)이 만료된 차량의 경우 모금회 사전 승인 후 매각(수출말소 포함), 폐차, 반납 등 차량 처분 가능
 - 배분기관 자체적으로 차량 처분할 수 없음
 - 다음의 관련서류 중 필요자료를 제출하고 모금회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.
 - 관련서류 : 차량배분계약서, 차량사진(도색확인), 차량등록증, 차량감정평가서(또는 중고차매매 법인업체의 견적서), 차량정비내역서(또는 차량검사표, 차계부, 1급 정비사 소견서 등) 사본 각 1부.

4. 최초 배분계약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차량 관리

- 9년이 경과한 배분차량의 처분 등 권리이양
 - 배분차량의 매각(수출말소 포함), 폐차 등 처분을 포함한 차량에 대한 일체의 권리·의무는 수행기관에 이양
 - 차량 구매 비용을 현금으로 배분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에서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계산
 - 단, 매각(수출말소 포함)을 위해서는 '모금회 표시 및 도색 제거 확인 후' 처분 가능
 - ※ 2018. 3. 31 이전 배분 차량은 최초 배분계약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면 권리이양이 가능함.
 - ※ '권리이양 안내'에도 불구하고 '모금회 표시 및 도색을 유지'하고자 하는 기관의 경우도, 권리이양 안내 시점부터 폐차처분은 가능함. 단, 추후 매각 필요시에는 반드시 모금회로부터 도색제거 확인을 받아야 함.

5. 어린이 보호차량 관련 유의사항

가. 관련법령

- 도로교통법 시행령[대통령령]
- 도로교통법 시행규칙[행정안전부령]

나. 유의사항

-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(2020. 11. 27 시행)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적용 범위 확대
 - 아동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, 사회복지관 등 포함
- 도로교통법 상의 어린이(만13세 미만)가 단 한명이라도 통학 등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구매
 - ※ 옵션품목 안전벨 필수 선택 반영 : 법규사항
 - 기존 지원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으로 튜닝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
-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모금회 전용도색[빨간라인] 적용 불가
 - 랩핑으로 모금회명 로고, 배분기관명 로고만 차량 적정 부근에 부착하여 사용
-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 필수
 - 어린이 보호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
 - 기존 지원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요건(황색도색, 표시등 설치 등)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
-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의무 준수
 -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참조
 - (예. 통학버스 신고, 동승보호자 안전교육, 보호자 동승표시,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)

※ 차량지원사업 지침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

별첨1. 차량지원사업 연간보고서

차량지원사업 연간보고서

- 사업명 :
 ○ 계약기간 :
 ○ 기관명 :
 ○ 제출일 : 년 월 일

차종명	차량번호		
연간 운행거리	km	1일 평균 운행회수 (주5일 기준)	
1회 운행 시 서비스 제공 대상자 평균 수		명	
주요 운행내용 (차량을 활용한 주요서비스내용)			
기타 운행내용 (또는 특이사항)			
정비내용	정비내용	정비일시	정비시 운행 km
사고 및 수리내용	사고내용	사고일시	사고처리 및 수리내역
교통법규위반 & 법칙금 납부	위반내용	위반일시	법칙금 납부내역(원)
차량운행과 관련된 모금회 건의사항, 의견			

※ 자동차 등록 원부 (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) 1부 첨부 요망

○작성자 : (인) ○기관대표 : (인)

2023 사업수행안내자료

발행처 :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

5141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91(두대동), 창원문성대학 7호관 4층

전화 : 055-270-6700 / 팩스 : 055-264-6702~3

홈페이지 : <https://gn.chest.or.kr>

© 본 자료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.
